

# 예 산 총 칙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94,889,089	77,841,000
	일반회계	2,222,410,833	66,672,000
	일반회계	2,222,410,833	66,672,000
	특별회계	372,478,256	11,169,000
	공기업특별회계	159,279,738	4,778,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59,279,738	4,778,000
	기타특별회계	213,198,518	6,391,000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6,661,318	199,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9,365,031	4,780,000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9,296,169	278,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4,826,000	444,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660,000	199,000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16,390,000	491,0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516,904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3,2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